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br>번호 | 21665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심사경과                                                                                                                                                      |
|------------------------------------------------------|---------|-------|-------------|-----------------------------------------------------------------------------------------------------------------------------------------------------------|
| 친환경농어업 육성<br>및 유기식품 등의<br>관리·지원에 관한<br>법률<br>일부개정법률안 | 2204871 | 문대림의원 | 2024.10.24. |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br>전체회의('24.12.13.) 상정 후<br>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br>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br>사소위원회 회부<br>-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br>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br>회('26.9.8.) 상정, 축조심사 |
|                                                      | 2205786 | 윤준병의원 | 2024.11.22.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br>전체회의('25.2.18.) 상정 후<br>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br>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br>사소위원회 회부<br>-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br>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br>회('26.9.8.) 상정, 축조심사  |
|                                                      | 2209201 | 김태선의원 | 2025.3.20.  |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br>전체회의('25.4.23.) 상정 후<br>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

|  |         |       |             |                                                                                                                                      |
|--|---------|-------|-------------|--------------------------------------------------------------------------------------------------------------------------------------|
|  |         |       |             |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br>-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축조심사                                                        |
|  | 2214559 | 송옥주의원 | 2025.11.26.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3.1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br>-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축조심사 |
|  | 2216569 | 임미애의원 | 2026.2.4.   |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6.4.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 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br>-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6.9.8.) 상정, 축조심사 |

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9.8.)

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

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역할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과정에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통한 친환경인증품의 공공수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한편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와 관련된 재심사 제도는 재심사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광고행위는 고의성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친환경인증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하며,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종료 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어업 정책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유기식품등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등의 재심사 절차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인증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신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그 구성·심의사항 및 존속기한 등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유기식품등 인증 및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재심사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처리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 제21조, 제38조, 제5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2조제3항제1호).

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별도의 부정행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이에 대하여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8호·제8호의2,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2항제11호).

사.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55조제2항제5호 신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역할”을 “역할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인증심사를”을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1조제4항 중 “심사를”을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8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고의 중지·정정·삭제 등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그”를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6조제1항제1호의2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1호 중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품을”을 “인증품을”로, “광고한 자”를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제38조제4항을”을 “제38조제6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6항·제8항, 제21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5조(민간단체의 <u>역할</u> ) (생 략)                                                                                                                                                      | 제5조(민간단체의 <u>역할 및 지원</u> )                                                                                                                              |
| <u>&lt;신 설&gt;</u>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 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br>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 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 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 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 의 의견을 <u>수렴하여야</u> 한다. |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br>-----<br>-----<br>-----<br>-----<br>-----<br>-----<br>-----<br>-----수렴하고, 제7조의2제 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 원회 또는 친환경어업발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br>-----.                                                                                                                                       |

1. ~ 10. (생략)

<신설>

11.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11.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  
회)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  
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  
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  
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  
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신 설>

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  
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

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  
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  
를-----  
-----  
-----.

⑥ -----  
-----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  
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⑦ (생략)

<신설>

⑧·⑨ (생략)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⑦ (현행과 같음)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  
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  
-----.

⑤ -----  
-----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신설>

-----  
-----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및 시정명령)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인증  
품을-----  
-----  
-----  
-----  
-----  
-----  
-----

8의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② (생략)

<신설>

<신설>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  
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  
의2를 위반한 자에게 해당 광  
고의 중지·정정·삭제 등 필  
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  
-----  
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신 설>

④ · ⑤ (생 략)

제55조(우선구매)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55조(우선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수수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  
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  
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6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0. (생 략)

11. 제30조제1항제8호(제34조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  
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  
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  
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  
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0조제9항-----  
-----  
-----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  
-----  
-----  
-----인증품을-----  
-----광고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0조제3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
|---------------------------------------------------------------------------------------------------------------------------------------------------------------------------------------------------------------------------------------------------------------------------------------------------------------------------------------------------|---------------------------------------------------------------------------------------------------------------------------------------------------------------------------------------------------------------------------------------------------------------------------------------------------------------|
| <p><u>인증품을</u>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u>광고한 자</u></p> <p>11의2. ~ 15. (생략)</p> <p>③ (생략)</p> <p>제62조(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20조제8항</u>(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u>제38조제4항</u>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p> <p>2. ~ 5. (생략)</p> <p>④ · ⑤ (생략)</p> | <p><u>다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u></p> <p>11의2. ~ 1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p> <p>1. <u>제20조제9항</u>-----<br/>-----<br/>-----<u>제38조제6항</u>-----<br/>-----<br/>-----<br/>-----<br/>-----</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